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3가단50309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이진성, 이운용, 박종훈

피 고 1. A

2.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3. C

4. D

변 론 종 결 2024. 4. 25.(피고 1, 3에 대하여) 2024. 5. 23.(피고 4에 대하여) 2024. 7. 4.(피고 2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4. 8. 8.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6,440,996원 및 그중 25,310,787원에 대하여 2023. 1. 18.부터 2023. 3. 28.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2022. 6.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22. 9.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26,440,996원 및 그중 25,310,787원에 대하여 2023. 1. 18.부터 2024. 5. 10.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2024. 7. 4.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각 배당금 중 각 26,440,996원 및 그중 25,310,787원에 대하여 2023. 1. 18.부터 2024. 5. 10.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2024. 7. 4.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각 통지를 하라.3.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D 사이에 2022. 9.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 D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14,881,793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제조업체 'F'를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2020. 7. 15. 보증금액 2,500만 원, 보증기한 2021. 7. 15.까지(그 후 2023. 7. 14.까지로 연장됨)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는 원고가 발급해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A가 2022. 10. 18.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23. 1. 18. 이 사건 대출원리금 25,310,7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고, 2022. 1. 1. 이후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연 8%이며, 구상채권 보전을 위한 체당금 잔액은 1,130,209원이다.

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22. 6.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22. 10. 4. 피고 C에게 2022. 9.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22. 10. 4. 피고 D에게 2022. 9.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3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G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가 개시되어 2023. 12. 28. 대금 586,550,000원에 매각허가가 되고 대금이 납입되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경매법원은 2024. 3. 12.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 회사에 106,950,213원, 피고 C에 63,577,681원, 피고 D에 14,881,79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 피고 C, D을 상대로 위 피고들이 위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을 각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4. 2. 23. 인용결정을 받아 위

피고들 및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무렵 각 송달되었다.

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는 적극재산으로 970,715,000원(= 이 사건 부동산, 감정가 865,715,000원 + 시흥시 H아파트 I호, 105,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신용카드대금 채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료채무를 제외하더라도 별지2 기재와 같이 약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J기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A 및 피고 회사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6,440,996원(= 대위변제금 144,618,385원 + 추가보증료 518,270원 + 법적 절차비용 7,175,757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5,310,78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3. 1.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3. 3. 28.까지는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 보증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가 이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변제할 아무런 방도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 및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2022. 10. 18.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인인 원고가 2023. 1. 18.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피고 A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정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에 관하여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A가 경영하는 F는 피고 회사로부터 철관을 공급받아 철관구조물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만약 피고 회사로부터 철관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로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여 철관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1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유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여러 사정 하에서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아니한 때에는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2018. 8. 30. 선고 2018다2283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F와 2013년경부터 철관공급 거래를 해온 사실, 이 사건 1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 회사는 F에게 11,345,070원 상당의 철관을 추가로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1근저당권 설정 당시 F의 미수금이 약 9,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피고 회사가 미수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면 미수금을 처리해줄 테니 우선 이 사건 1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철관을 추가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1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고 위와 같이 11,345,070원 상당의 철관을 추가로 공급한 사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 A는 피고 회사와 연락을 두절하고 2022. 10. 14. F를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에는 향후 공급한 철관대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나 그 액수가 기존 피담보채무액인 약 9,000만 원의 1/9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대부분 기존 미수금 채무라고 보이는 점, 위 추가 공급 후 얼마 되지 않아 F가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라거나,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회사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A의 미수금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여 2021년 말부터 4,000만 원을 넘어섰고 2022년에 들어서 더 이상 미수금 회수를 미룰 수 없어 피고 A에게 처리를 요청하였으며, 2022년 5월에는 더 이상 철근 공급이 어렵다고 통보하자 이 사건 1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피고 회사로서는 피고 A가 심한 재정난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액은 앞서 본 26,440,996원 및 그중 25,310,787원에 대하여 2023. 1.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0204.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인 2024. 5. 10.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최종 변론종결일) 인 2024. 7. 4.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원고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 및 피고 C, D이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 회사 및 피고 C의 경우에는 각 그 배당금이 위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위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D의 경우에는 위 피보전채권액이 위 배당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3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회사 및 피고 C은 위 경매사건에서 위 피고들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각 배당금 중 위 피보전채권액에 상응하는 돈의 배당금출금청구권을 피고 A에게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위 경매사건에서 위 피고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14,881,793원의 배당금출금청구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별지

1) 피고들에 대하여 같은 날 변론종결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원고의 의사로 보이므로, 지연손해금의 종기를 최종 변론종결일로선해한다.